

미국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강화

2008. 7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로스앤젤레스 a T 센터

1. 개 요

- 미국은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야채나 과일 생선 쇠고기 등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기로 하여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함에 따라 수출업체 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COOL)'은 지난 2002년 상정되었으나, 5년 동안 시행이 미뤄져 오다 지난 4월 이슈화 된 토마토 살모넬라 감염 파동으로 원산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기인 된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가. 배 경

- 2002년 의회에서 1946년의 농산물 거래법에 추가하여 “2002 농장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법안은 새로운 원산지 표기법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법안은 2004년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되었으나 2004년 1월 부시대통령의 유예 법안의 서명으로 2006년 9월까지 유예, 2005년 11월 다시 유예법안에 서명하여 2008년 9월말까지 강제적 시행은 유예되어 왔으며 현재 자율적인 표시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자연산 및 양식 어류에 대해서는 의무적 시행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도 미국 내 8개주는 자체적인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Alabama, Arkansas, Florida, Louisiana, Maine, Mississippi, North Dakota, and Wyoming)

나. 주요 내용

- 소매점들은 판매하는 아래의 식품에 대해 알기 쉽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① 적색육(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 ② 어류 및 패류(양식과 자연산 구분)
 - ③ 상하기 쉬운 과일 및 채소류(신선 혹은 냉동 구분)
 - ④ 땅콩류

◦ 예외대상

- ① 가공식품의 원료인 경우(예: 베이컨, 오렌지쥬스, 땅콩잼, 샐러드용 혼합 야채제품, 혼합땅콩류 캔제품 등)
- ② 식음료 서비스 공간(예: 레스토랑, 바, 슈퍼마켓 안의 음식코너 등)
- ③ 과일 및 야채의 연간 매출이 \$230,000 미만의 식료품점

◦ 원산지 표시 유의점

- 미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기를 위해서는 그 식품이 완전한 미국 산이어야 함
- 예를 들어 육류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도살된 것이어야 하며, 어류의 경우 미국해안에서 잡히거나 미국적 선박에 의해 조업되어 미국 내에서 가공처리된 것이어야 하고 과일, 채소, 땅콩은 미국내에서 재배된 것이어야 함
- 육류 및 어류 중 미국외에서 몇단계의 생산공정을 거쳐 미국내에서 최종생산된 경우 혼합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캐나다산 돼지가 미국에서 사육, 도살된 경우 : 여러 나라의 소들로 만드는 간소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기가 더욱 복잡해지며 각각의 원산지를 알파벳순으로 표시하여야 함(예 : Product of Australia; Imported from Mexico, Raised and Slaughtered in U.S.A.; Product of U.S.A.")
- 같은 종류의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예 : 간소고기, 홍 상추와 양상추의 묶음 등) 다른 종류가 혼합된 경우 제외 됨(예 : 상추+토마토+오이 등이 섞인 샐러드 박스 등)

◦ 원산지 정보기록

- 제품의 생산/공급자는 원산지정보를 표시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공급경로의 중간에 위치한 업체는 이전에서 정보를 받아서 다음경로로 넘길 때까지의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 수입품의 경우 최소한 하역항으로부터의 원산지정보가 추적 가능해야 하며 정보의 보관기한은 2년임

◦ 위반 시 제재규정

- USDA는 위반업소에 대해 30일간의 정정기간을 주고 이후 고의적인 위반건당 \$1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제품경로의 중간단계의 업체가 이전단계의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원산지를 알수 없는 경우 과실이 있는 업체에게 \$10,000의 벌금 부과

◦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규정

-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품은 최종 구매자를 위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
- 현재 모든 수입육과 박스포장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일 및 야채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원산지 표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소비자판매용의 포장제품 외에 다량의 제품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업자는 표기의무가 없음
- 원재료의 “상당한 수준의 변형”이 발생하는 가공제품의 원료는 가공업체가 최종 구매자가 되므로 가공 처리된 이후는 원산지표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조공정에 있어 국내 생산품과 같은 위생법과 식품안전법에 의한 규제를 받음

◦ 표시 형태

- 판매자는 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대에 표지판, 글자표시, 도장표시, 플래카드 또는 기타 식별 방법을 사용해 미국내산과 수입원산지 여부를 표시해야 함
- 표시내용은 “ Product of USA”, "Grown in Mexico", 혹은 국가명 "USA", "Mexico" 로 표기할 수 있으며 United Kingdom을 "U.K"와 같이 줄여서 표기하는 것도 가능함
- 하지만 국기나 다른 국가상징물만 사용하거나 주명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은 안 됨

다.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찬, 반 의견

-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른 각종 자연재앙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 옹호론자들은 원산지 표시제를 통해 현지생산 작물의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서 장거리로 운송되는 식품의 양을 줄여 에너지소비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장거리 운송을 위해 과일 및 채소 등에 사용되는 각종 농약 및 방부제의 위해성을 지적하며 특히 최근에 대두된 광우병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통제를 위해 원산지표시제의 강화를 주장
- 반면 반대론자들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 민감도가 낮으며 판매현장에서 정확히 실행하기도 힘든 이 제도를 준수하기위한 비용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원가 및 소비자 가격상승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
-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누리는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국제적인 무역 분쟁의 발생소지가 높아진다고 주장

라. 원산지 표시제가 한국산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수입 농식품의 포장에는 원산지 표시가 이행되고 있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근본적인 원산지표시의 주체는 판매업체로 교포마켓을 비롯한 신선 농수산 식품 매장에서 한국산으로 오인식 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사례들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전망 되어 순 한국산에 대한 차별화가 가능하여 수출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됨

3. 관련 언론 뉴스

○ 미국, 과일·쇠고기 등 수입식품…원산지 표기 단속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후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도 수입 식품 원산지 단속에 들어간다.

미국은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야채나 과일 생선 쇠고기 등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각 소매점은 수입 식품의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COOL)'으로 지난 2002년 상정됐으며 2년 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제정됐으나 각 국가와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로 5년동안 시행이 미뤄져 왔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국 16개 주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에 의한 질병 원인이 수입 토마토로 의심되면서 이 법이 다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연방식품의약청(FDA)은 문제된 토마토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데만 2개월이 넘게 걸린데다 감염된 토마토가 아무런 제재없이 미국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FDA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이 감염됐을 경우 48시간 안에 감염 통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미국 도매상 및 중간업체들과 소매업소들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경우 수입식품 구입을 꺼릴 것이라며 벌써부터 매출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10월부터 원산지표기 의무화

10월 1일부터 모든 식품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한인 대형마켓들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02년 상정 2004년 제정됐으나 5년 정도 시행이 미뤄졌던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COOL)에 따르면 마켓 등 소매점들은 그로서리와 수산물은 물론 과일 및 채소 육류 등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수입 식품은 물론 원산지가 여러 곳인 제품의 경우에도 모두 밝혀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산물은 2005년 4월4일부터 원산지 및 생산방식 표기가 의무화됐고 그로서리 대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어 한인 마켓들은 'COOL'이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산물의 경우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of 1930) 라이선스가 있는 마켓들은 생선 코너 진열대 앞에 원산지 뿐만 아니라 양식 여부 및 종류 등 세부적인 정보가 담긴 표지판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있다.

그로서리는 대부분 'origin' 'made in'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왔다.

육류의 경우 캐나다산이나 호주산 등이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 한인 마켓들이 취급하는 육류는 100% 미국산으로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과 큰 연관이 없다.

○ 신경써야할 부분은 과일 및 채소.

대부분 미국 내에서 재배되긴 하지만 계절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남미와 유럽에서 수입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배 포도 딸기 버섯 꾀알 등 한국에서 들어오는 과일 및 채소가 크게 늘었다.

아씨수퍼 스티브 김 야채부 매니저는 "이미 자발적으로 과일 및 채소 코너 각 섹션마다 가격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표지판을 붙이고 있다"며 "원산지 표기법이 시행돼도 시스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국가별로 수입하는 과일 또는 채소의 각 포장이나 알마다 원산지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해야하는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packed in'이라고 표기돼 원산지가 애매한 그로서리의 경우 수정 및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남체인 김병준 이사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으로 수산물에 미뤄 연방농무부(USDA)가 세부조항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바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인마켓들,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비 분주

오는 10월부터 야채나 과일 닭고기 등 모든 식품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다. 뉴욕 일원 한인마켓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법 시행에 들어가면 유통업체들은 모든 수입식품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수입 식품은 물론 간식고기처럼 원산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마켓들은 대부분의 식품에 이미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어 큰 작업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H마트의 김동준 과장은 "그로서리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배 갯잎 버섯 종류나 남미산 과일 등 계절에 따라 국가별로 수입되는 야채나 과일 종류에 대한 표기 부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육류의 경우 100% 미국산"이라며 "시스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산지 표기법은 지난 4월 중순 시작된 '살모넬라 파동'의 원인으로 수입 토마토가 의심받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살모넬라 파동'이 3개월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아직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감염원 대상을 할라피뇨 실란트로 등으로 확대하면서 갈팡질팡하자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같은 원산지 표기 확대 소식에 소비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해 중국산 제품 파동에서부터 최근의 토마토 할라피뇨 파동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안전이 큰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 아틀란타, 한인 마트들도 원산지 라벨 부착 준비

오는 10월부터 미국에서도 야채나 과일, 생선, 쇠고기 등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애틀랜타의 한인 유통업체도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인 마트들은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 이미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채나 생선류의 개별 포장팩에 원산지 라벨을 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COOL)'으로 당초 지난 2002년 의회에 상정돼 2년 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으나 관련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5년동안 시행이 보류됐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국 16개 주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에 의한 질병 원인이 수입 토마토로 의심되면서 원산지 표기법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연방식품의약청(FDA)은 문제된 토마토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데만 2개월이 넘게 걸린데다 감염된 토마토가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 내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안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FDA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이 감염됐을 경우 48시간 안에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법 시행에 들어가면 유통업체들은 지금까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던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애틀랜타에 3개의 직영 점포를 두고 있는 슈퍼H마트의 김경석 소장은 "그로서리의 경우 이미 100%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참외, 버섯 종류나 남미산 과일 등 계절에 따라 국가별로 수입하는 야채나 과일 종류에 대한 라벨 부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시스템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기 때문에 10월 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중 둘루스에 2호점 출점을 앞둔 아씨 플라자 관계자도 "수입 생선은 이미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다"며 "개별 포장팩에 원산지 표기 라벨을 붙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아씨플라자 스와니점 지점장은 "야채의 경우 100% 미국산이며 남미에서 과일 등을 수입하고 있어 원산지 표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식품 전문가들은 원산지 표기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도매업체 등이 원료나 반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마지막 포장을 했거나 제조했다면 미국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산이라고 원재료까지 한국산이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식품 표기법 규정상 원료 원산지만 표기하고 반제품 제조국은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자사 브랜드 상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을 통해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 한인유통업체의 관계자는 "한국산 식품은 대부분 OEM을 통해 들어온다"며 "원료 생산지나 반제품 제조국까지 모두 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중국산에 대한 한인 소비자들이 불신이 적지 않아 원산지 표기는 관련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캐나다, 상품 원산지 표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캐나다의 새로운 원산지 표시법이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2009년 1월1일 발효되는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일례로 수입 오렌지로 국내에서 생산한 오렌지 주스는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레벨 대신 ‘수입 재료를 이용한 캐나다 상품(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 상표를 달게 된다.

현행법은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15일 새 시행령을 발표한 게리 리츠 연방농무장관은 이미 지난 5월에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리츠 장관은 “소비자와 생산업자, 식료품 공급업자 대다수가 현재의 모호한 상표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가 말했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다음과 같다.

▲Product of Canada :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

▲Made in Canada :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한다.

이외 ‘캐나다에서 구운 고기(Roastd in Canada)’와 같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특별 문구도 허용된다.